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김석기·김상훈·김도읍

김선교 · 송언석 · 안철수

서천호 · 이달희 · 강대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,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, 100m 이내 접근금지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,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,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 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,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(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"제4호"를 "제4호 및 제5호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
- ⑧ 제1항제5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	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		
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	조치) ①		
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			
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			
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			
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			
(이하 "잠정조치"라 한다)를 할			
수 있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
⑦ 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3	7		
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			
3개월, 같은 항 <u>제4호</u> 에 따른	<u>제4호 및 제5호</u> -		
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			
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			
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			
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			
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			
2호·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			
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			
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			

에서 연장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

-----.

 ⑧ 제1항제5호의 위탁의 대상

 이 되는 상담소의 기준과 그

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